

협회 운영규정(정관)

제안 2018. 3.

제정 2018. 9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① 본 기관의 명칭은 “한국교육연수원협회” (“가칭 ‘한교협’이라 한다.”)이라 한다.

② 기관의 영문 표기는 “Korea Education Training Association(KETA)”이라 표기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협회는 교원,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연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, 회원사 간의 정보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에 그 목적을 둔다.

제3조(소재지)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·도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가 원격교육연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
2. 국가 원격교육연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
3. 국가 원격교원연수원 운영 지원 및 연수과정 품질관리와 관련 자격증 부여에 관한 사업
4. 기타 국가 교육연수 발전에 관련된 제반 사업 등

제 2 장 회 원

제5조(자격)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회원 : 교육부 인가 교원연수기관 및 소속 직원 또는 업무 관련자
2. 준회원 : 교육연수 솔루션 및 콘텐츠 개발 기관 또는 업무 관련자(준회원은 기여도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 승격 가능)

제6조(가입)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회비) ① 임원, 정회원, 준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② 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. 단, 준회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
2. 정관 및 기타 관련 규정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
3. 총회 의결사항의 이행 의무

제9조(탈퇴) 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10조(제명)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1.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정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
제 3 장 임원 및 조직

제11조(임원)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: 1인
2. 부회장 : 5인 이내
3. 이사 : 5인 이내
4. 사무국장 : 1인
5. 감사 : 1인

제12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 ① 본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후임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다음 총회에서 의결 받아야 한다.

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직무)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결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주요 사안을 의결하며,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기관의 제반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임원의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
 - 2. 업무계획 ·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

제 4 장 총회 및 운영

제14조(총회의 구성 등)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.
 - 1. 회장이 협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
 - 2.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의할 때
 - 3. 회원의 1/3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
- ④ 총회 소집은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인터넷, 문자 등으로 공고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총회의 의결)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-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 및 예산 · 결산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3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- ②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원은 지정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.

제16조(이사회 구성 등) 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협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 · 의결한다.
-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이사는 지정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.

제17조(사무국의 구성) ① 협회는 총회에서 부의한 사항 및 관련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의 설치 정원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협회의 각종 회의체 운영 및 지원
2. 회원 가입 및 탈회 관련 업무
3. 협회의 회계 및 사무관리
4. 협회의 공식적인 대외 창구 역할
5.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부대업무 등

제18조(재산 및 경비)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.

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며,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정한다.

④ 협회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⑤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⑥ 협회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⑦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경우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.

⑧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임을 원칙으로 한다.

⑨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매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19조(수익 활동 등) ① 협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 및 행사 등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협회는 비영리 목적으로 정부 부처 등 교육 사업에 대한 수탁 및 제안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, 그 업무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사무국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③ 수익 목적 등의 사업 및 규모는 이사회 의결로 하되,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20조(제 규정)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협회의 정관은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연도)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.

제3조(설립 당시의 준비위원) ① 협회 설립 당시의 준비위원은 교육부 인가 교원연수기관 관계자 협의회에서 정하며, 협회 설립에 따른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준비위원의 임기는 협회 설립 등기 전일까지로 한다.

③ 협회 설립을 위하여 설립 당시 임원은 현금 2,000,000원을 출연하며, 정관을 작성하고 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.